

# 양해각서

본 양해각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(이하 “서울교대”라 한다)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“KT”라 한다) 간에 체결 되었다.

## 제 1 조 (목적)

본 양해각서는 “KT”와 “서울교대”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 간 업무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협력의 범위)

“KT”와 “서울교대”는 상호 협력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, 상호 협력 분야 및 각 당사자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잠정적으로 정한다.

### ① 상호 협력 분야

1. KT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협력
  - 공동시범사업 추진, 정부 등 유관기관 대상 사업 추진 협력 등
  -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고도화 및 최적화를 위한 공동 연구
2. 에듀테크 기술 접목, 일선 교육현장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/개발 및 사업화 협력 (추후 별도 구체화)

### ② KT의 역할

1.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기획/설계/개발
2.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
3. 미래 교육실현을 위한 온/오프라인 에듀테크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

### ③ 서울교대의 역할

1.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교육기관 서비스 적용
2. 비대면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고도화 및 최적화를 위한 연구 및 개선사항

## 도출

### 3. 미래 교육실현을 위한 온/오프라인 에듀테크 기술연구 개발

#### 제 3 조 (유효 기간)

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다만,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양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양해각서는 효력을 상실한다.

#### 제 4 조 (비밀유지)

- ①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(이하 “정보제공 당사자”라 함)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을 “정보제공 당사자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  1. 정보제공 당시 “정보수령 당사자”가 이미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
  2. “정보수령 당사자”가 본 양해각서를 위반하지 않고 “정보제공 당사자” 이외의 적법한 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
  3.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
  4. 외부자문 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. 다만, 이 경우 공개당사자는 외부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해제, 해지, 만료 기타 사유로 본 양해각서가 실효된 이후에도 1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.
-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 (법적 구속력)

- ① 본 양해각서 제4조 (비밀유지), 제5조 (법적 구속력) 및 제 6조 (기타)를 제외하고는, 각 당사자간 협력사항 및 기타 역할의 수행 등 본 양해각서의 다른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.
- ② 본 양해각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수여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## 제 6 조 (기타)

-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과정상 각 당사자가 담당할 역할의 수행과

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-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상의 지위,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,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에도 본 양해각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④ 본 양해각서의 유효성, 구성,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.
- 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이나 문제는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.

상기 사항의 증명으로 각 당사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본 양해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다.

2020년 9월 8일

서울교육대학교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,

총장 임채성 (인) 

주식회사 케이티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대표이사 구현모를 대리하여

Customer 부문장 강국현 (인) 